



##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2년 11월

### • 예규·판례

가. 생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22 서 7133,  
2022. 11. 9)

####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  
서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휴할인(청구·현장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할인액을 가맹점과 분담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위 할인액 중 청구법인 부담액(이하 “할인비용부담액”이라 한다)과 계열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 정산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2016~2017 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22.2.25.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아래 000 과 같이 2016~2017 년 귀속 교육세 합계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4.25. 할인비용부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부담액과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6~2017 년 귀속 교육세 합계 000 원을 환급하였으나, 할인비용부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함
  - ✓ 쟁점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 5 조 제 3 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쟁점 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22 서 6534, 2022.11.09)**

####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할 것(이하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을 약정 시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위한 보조금(이하 “공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에 중도해지 및 요금제 변경 등(이하 “중도해지”라고 한다)으로 약정을 위반하면 이용자로부터 위약금(이하 “쟁점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OO 청장은 2022.1.20.~2022.3.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4.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함

####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함
  - ✓ 쟁점 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이동통신 등의 상품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객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상품서비스 대가인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의무사용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 점
  - ✓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을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 이러한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은 청구 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 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같은 뜻임)
- ✓ 청구법인이 정한 영업정책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대리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바, 청구법인과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단말기 공급계약 이 없어 쟁점위약금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법 인 주장으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3 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2022.11.02.)**

■ 회신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3 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 1 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소득-5836, 2022.11.09)**

## ■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17.1.2. 조세특례제한법§30①의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A 에 취업한 후 '18.2.28. 결혼('18.5 월)을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21.10 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B 에 취업함

(질의내용)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 1 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